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91
----------	-------

발의연월일 : 2024. 1. 16.

발 의 자 : 박성중 · 유경준 · 최춘식
이종성 · 양향자 · 김영식
태영호 · 황보승희 · 전봉민
김은희 · 이주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51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 ④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이행강제금)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13조(이행강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u>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 ③ (생략) <u>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u> <u>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u>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u> <u>⑤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u>

<u>준용한다.</u>	<u>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